

「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봉양순 의원)

□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
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봉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

의안번호 제2558호,

「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일부개정조례안은

첫째,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주요 배출원인

도장시설의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

둘째, 비규제 대상인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의 방지시설

설치 명령을 권고로 완화하며

☐ 셋째, 시민과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
대기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
동의합니다.

☐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